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 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